

1991년도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목 차

I. 감사의 목적2
 II. 감사기간2
 III. 감사실시대상기관2
 IV. 감사실시경과2
 1. 감사반의 편성.....2
 2. 감사일정및 장소.....3
 3. 현장답사.....3
 V. 주요감사실시내용4
 1. 소관별 실시내용.....4
 가. 총무국 소관(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포함)4
 나. 재무국소관5
 다. 시민국 소관(보건소포함)5
 라. 도시정비국 소관6
 마. 건설국 소관6
 2. 현장답사 주요내용.....6
 VI. 감사결과 처리의견6

1. 시정및 처리요구사항.....6
 2. 건의사항.....8
 3. 처리의견.....8
 VII. 기타특기사항9
 1. 우수사례.....9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9
 VIII. 주요 근거서류

I.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II. 監査期間

1991.12.11(수)~1991.12.13(금) 3일간

III. 監査實施 對象機關

마포구청(보건소포함), 동사무소

IV. 監査實施 經過

1. 감사반의 편성

반 별	대 상 부 서	감 사 반 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총괄	마 포 구	위원장 간사	이종일 정연우	
제 1 반 (6인)	총무국문화공보실 감사실시민봉사실	심재창	이강필, 김성환, 조희태 운동현, 권오범	김경환 윤재명
제 2 반 (5인)	재무국	유남렬	김유현, 박주서, 홍길표 이봉형	이의택 신승관
제 3 반 (5인)	시민국 보건소	이종일	송운석, 이종만, 홍성환 정연우	유기화 이경용
제 4 반 (7인)	도시정비국	김종열	정병만, 김문태, 윤명규 채운석, 한현덕, 윤정용	
제 5 반 (6인)	건설국	김동휘	손용호, 구우석, 김상열 이인구, 이천규	

2. 감사일정 및 장소

반 별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제1반	91.12.11(수)~12.13(금)		총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의장실	현황보고청취 자료요구 정책질의	행정관리 분과위원회
제2반	"		재구국	소회의실	"	재정운영 분과위원회
제3반	"		시민국 보건소	의원휴게실	"	시민생활 분과위원회
제4반	"		도시정비국	전문위원실	"	도시정비 분과위원회
제5반	"		건설국	귀빈대기실	"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3. 현장답사

건설국 소관 난지, 봉원 우수배제 펌프

장 건설현장을 답사할 것을 의결('91.12.11)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였음.

일 시	현장 답사 반	답 사 대 상	비 고
91. 12. 11 13:00 ~ 16:00	제 4 반 (김동휘 감사반 장의 5인)	○난지 우수배제 펌프장 건설현장 ○봉원 우수배제 펌프장 건설현장	○송인록 하수과장의 보고, 질의, 현장확인 *수감기관 참석자 ·김영규 건설국장 ·송인록 하수과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V. 主要檢査實施內容

1. 소관별 실시내용

가, 총무국 소관(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포함)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광장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 대책 ○상암동등 근무환경 열악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 배려대책 ○우수공무원 포상시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정한 심사기준 확립대책 ○시민포창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 ○의회와 긴밀한 업무 연락체제 확립을 위한 의회협력제 인원보강 대책 ○구내식당의 수준향상 및 운영관리 개선대책
기 획 예 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및 예산편성시 지역주민과 주민대표 의견 대폭적 수렴 방안 ○각종 행정통계의 정확성 확보 대책 ○전산 프로그램의의 지속적 개발등 행정전산화의 지속적 발전 대책
국 민 운 동 지 원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개선대책 ○새마을소득 자금용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의 동별 형평성 확보대책 ○이동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생 활 체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별 동호의 모임인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적정예산과 인력확보 방안 ○구민 여가선용 증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교실,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 방안
민 방 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대책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구독의 적정화 방안 ○홍보비 집행의 효과성 확보 대책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지도적 감사방안 ○환경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대책
시 민 봉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상황판 제작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찾아가지 않는 전화민원 서류 처리대책

나. 재무국 소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 계약방법의 적법성 준수여부 ○물품구매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대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책 ○채납공과금 관리 및 징수대책
세 무 1, 세 무 2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채납현황과 징수대책 ○고액채납자 관리현황과 처리대책
토 지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홍보교육 및 행정지도 대책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업무 적정성 여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다. 시민국 소관(보건소포함)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로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 ○취로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알뜰장 운영의 적정성 여부 ○청소년 독서실 건립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 대책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실태 ○노인정 건립 및 운영실태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허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과 대책 ○심야 퇴폐, 변태, 영업시간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실적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안전관리 대책 -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 강화 방안
환 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대책 -도시가스 사용의무 점검 실적 -폐수,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폐수, 수질검사 실적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실적 ○환경보건 홍보교육 추진실적과 확대대책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대책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추진현황 ○수거방법의 적정성 여부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지역 주민 보건 관리대책 ○성산동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보건대책 ○전문인력 보강대책

라. 도시정비국 소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주 택 과	○주택건설자재 생산업체의 지도감독 대책 ○무허가건물 발생방지 및 처리대책
도 시 정 비 과	○유동광고물 단속대책
지 역 교 통 과	○주차공간 확보 및 단속방안
지 적 과	○지적민원 처리업무 적정성 여부 ○지적공부의 관리
건 축 과	○건축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대책

마. 건설국 소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건 설 관 리 과	○건설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예산의 적정여부 ○'92년도 예산(안)중 건설국 예산 요구액의 반영사항
토 목 · 하 수 과	○수방시설 관리현황과 향후 시설계획 대책 ○도로관리 시설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재해대책 준비상황 및 제설장비 상태 ○도로 불법 점용물의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공 원 녹 지 과	○녹지관리 시설공사 예산 적정편성·집행 여부 ○공원녹지 예산 및 학술용역비의 적정성

2. 현장답사 주요내용

- 위치, 공사내용, 공사기간, 총소요예산 확인 점검
- 투자시설의 규모등 적정성 여부
- 시설공사 예정 대 공사진행 상황
- 공사감독 상황
- 지역주민의 의견검토
 - 진정서 제출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봉원 우수배제 펌프장)

VI. 檢査結果 處理意見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가. 총무국 소관(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포함)
 - 1) 행정수요의 증가로 민원인의 구정출

입 증가와 함께 구청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바, 전문 주차관리 요원의 채용등 체계적인 주차관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바람.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용자대상가구 선정시 구의원, 동장 및 새마을협의회회장을 포함한 엄선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바람.

3) 이동 도서관이 홍보부족으로 주민이용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 "내 고장 마포소식"에 게재, 통반장을 통한 홍보등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책

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 4)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회정착을 위해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바람.
- 5) 각종 구정홍보지를 전주민이 읽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정홍보대책을 적극 강구바람.
- 6) 환경순찰업무의 경우 '91년도 적출실적이 48,613건으로써 순찰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 장비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7) 전화민원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가 10~13%에 이르러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바, 사장되는 전화민원 서류의 예방대책을 강구바람.
- 8) 담변이 미흡한 사항중 시장·구청장 지시사항의 처리유형별 통계자료를 제출 바람.

나. 재무국 소관

- 1)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구입함에 있어 연간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계약한 후 분할납품토록 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필요시 마다 분할구입 계약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간 소요량을 면밀히 파악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바람.
- 2) '91년도 설날 통·반장 보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과 57,373,818원 상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물품구매계약 업무의 적정성을 결여 하였는바, 향후 물품구매시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3) '91.10.31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279,000,000원에 이르고 있음. 이와같이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발생함으로써 구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 감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 4) 부동산중개인에게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채 중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않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 5)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구유재산 점유자들이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평소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상의 손실발생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다. 시민국 소관

- 1) 가정복지 업무중 영선업부의 수요가 많음을 고려 건축직공무원 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 퇴폐, 변태영업 우려와 과소비 성향이 없는 업종(숙칭:가라오케)을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 중간단계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3) 도시가스 사용시설자금 융자제도를 확대보급 하기 위한 예산확보, 융자절차 간소화등의 대책을 강구 바람.
- 4)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전담반을 설치 단속실적을 거양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5) 공해감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6) 환경미화원 인사지침에 의거 연1회 환경미화원 전원을 순환근무토록 함으로써 순환시기에 발생하는 청소 태만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도의 개선대책을 강구 바람.
- 7)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구민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바람.
- 8) 성산동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특수 진료사업계획을 강구 바람.
- 9) 보건소와 유관단체의 협조하에 저소득층 진료강화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계획을 강구 바람.
- 10)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법규에 맞게 엄선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라. 도시정비국 소관

- 1) 주정차 단속시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단속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 유동광고물의 철저한 단속과 광고물 관리제 직원 증원 대책을 강구 바람.
- 3) 감리(건축)사의 철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하는 대책을 강구 바람.
- 4) 성산2동 고가도로 하단의 불법시설물 단속 대책을 수립 시행 바람.
- 5) 관내 무허가 건축자재 생산업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 바람.

마. 건설국 소관

- 1) 각종 신설도로공사등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단일공사건에 한해서는 가급적 일괄 토지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연차적 보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사업비 증가 억제대책을 강구 바람.
- 2) 기 보상금이 지급된 수용토지에 한해서는 기존 건축물등을 조기에 철거하여 철거지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산적, 행정적 손실예방 대책을 강구 바람.
- 3) 각종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연중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년도 중반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 바람.
- 4) '92년도 구청 제출 예산(안)중 주민수원사업 건설예산은 약 105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4%에 지나지 않는 예산규모인바, 이는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크게 부족한 예산으로 다음년도 예산 편성시는 건설사업 예산의 적정 반영 대책을 강구 바람.
- 5) 지역 사업비 편성에서도 당인동, 공덕동, 아현동, 염리동등 낙후지역보다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등 생활수준과 구획정리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책정된 것은 지역별 형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써 차후부터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 6) 지역개발 소규모 부지비 34건, 하수사업 6건, 기존사업 3건등 43건에 대

한 사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설명이 결여 되었는데, 차후부터는 단기사업, 연차사업여부와 연차사업일 경우 사업별, 연도별 추진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기 바람.

2. 건의사항

가. 총무국 소관

민방위훈련 불참시 처벌관계 법규가 있으나 1991년도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고발사례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처벌 법규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개선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재무국소관

- 1) 감사 당시만 각종 재세 공과금이 체납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현장도면식 담변태도를 지양, 체납액 감소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2) 고액체납자는 원천적 강제징수방침을 설정 체납액 해소방안 강구 바람.
- 3)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는 주차장 질서확립이나 수입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나 이 수입금이 자치구 재정에 세입 처리되어 주차장 설치 개선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건의 바람.

다. 시민국 소관

- 1) 취로사업노임 단가가 낮아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사업 기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 자활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노임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 의료보호대상자도 일반 의료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3)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있어 비사업용, 사업용 구분없이 시·도지사가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 조치바람.
- 4) 공해 단속시 법적 기준에는 하자가 없으나 공해업소지역 주민들이 분진, 소음, 진동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고려, 이에 대한 대

책을 강구바람.

- 5) 현행 청소 수거방법인 하절기 2일, 동절기 3일 수거방법을,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6) 시민알뜰장 운영이 근본 목적에 부합치 못하고 편법운영되고 있는바, 현행 월 2회 운영되던 것을 년4회로 축소 운영하는등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바람.
- 7) 구단위, 동단위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 자생단체가 너무 난립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폐합하여 단위의위원회로 운영하는등 개선책을 강구 바람.

라. 도시정비국 소관

민원업무 처리시 철저한 서류확인과 현장조사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예: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한정면허 전 환건 - 성산2동)

3.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마포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함.

가. 부서별 요구 건수 현황

구 분	계	실	과	별	건	수	비고
총 계	57						
총 무 국 (3 실)	22	감사실(2),	총무과(9),	기획예산과(3),	국민운동지원과(6),	생활체육과(1)	민방위과(1)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재 국 국	8	재무과(6),	세무1과(1),	토지관리과(1)	[세무2과]		
시 민 국	13	사회복지과(5),	가정복지과(1),	위생과(2),	산업과(3),	청소과(2)	[환경과]
보 건 소	4	보건행정과(3),	보건지도과(1)	[의약과]			
도 시 정 비 국	5	주택과(1),	도시정비과(1),	지역교통과(2),	건축과(1)		[지적과]
건 설 국	5	건설관리과(2),	토목과(1),	공원녹지과(2)	[하수과]		

VII. 기타 特記事項

1. 우수사례

가. 총무국

○ 시민봉사실장과 전직원이 합심단결, 민원실을 깨끗이 가꾸고 민원인에게 친절봉사 자세로 근무한 결과 서울시 22개 구청중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례.

○ 기획예산과가 수립 시행한 "91월동 종합대책"은 재설, 연료수급, 재해안전, 상수도 급수,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 등 제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동절기 구민생활에 만전을 기한 사례.

나. 재무국

○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일정규모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을 '91년도에는 748백만원을 올린 실적이 있으므로 사기 진작책으로 표창상신 요망함.

다. 시민국, 보건소

○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 안정성을 제고시킨 사례.

○ 환경보건시범학교 운영등 환경보건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

○ 병원등 관내 보건진료팀과 유관단체 합동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나. 의원별 요구자료 목록

연번	요 구 자 료	요 구 의 원	소 관 과	비고
1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정기 및 수시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각 분 과 공 통	감 사 실	
2	자체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	
3	총무국소관 민원 및 진정사항 접수처리 대장	행정관리분과 (윤 동 현)	총 무 과	
4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외 직급별 정, 현원 및 결원내역		총 무 과	
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지원및 용자와 용자금 회수 현황	이 봉 형	국 지 과	
6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 및 자녀장학금지급현황	행정관리분과 (윤 동 현)	국 지 과	
7	24개동 예산안 및 편성 운영현황(각목 명세서)		총 무 과	
8	마포구 인사위원회 회의록		총 무 과	
9	내무행정지원비중 각동에 배정된 금액과 집행내역		총 무 과	
10	국민운동지원비 지출에 따른 월별 행사 내역과 지원사항		국 지 과	
11	새질서새생활 업무 추진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관계 서류		기 획 예 산 과	
12	'91년도 하반기 동사무소시설 보수비(구 지원금)지급내역 및 동자체 사용내역		총 무 과	
13	동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서류		총 무 과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관리와 기금지원에 관한 내역 및 관계서류일체		국 지 과	
15	체육시설업 정기검사 및 지도단속, 무허가설 업소 단속과 고발내역		생 활 체 육 과	
16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운영, 자원관리, 동원명령, 검열내역		민 반 위 과	

연 번	요 구 자 료	요 구 의 원	소 관 과	비 고
17	공무원 포상자명단원부, 공적조서, 징계 기록부 포상자 심사대장		총 무 과	
18	새마을지도자 포상 및 표창자 명단, 공적조서, 포상자 위촉일, 포상자 심사 대장		국 지 과	
19	새마을지도자 여비청구 및 지급내역		국 지 과	
20	통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서류		총 무 과	
21	'91 판비(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의 예산 및 집행명세	재 정 운 영 분 과	재 무 과	
22	단위사업비 5억원이상의 사업내역과 사전심사 분석 내역	유 남 렬	기 획 예 산 과	
23	'91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김 유 현	세 무 1,2 과	
24	'91 정보비 직급별 지급액 현황	이 봉 형	재 무 과	
25	'91 각종사업의 도급계약 명세(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홍 길 표	재 무 과	
26	'91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관리 현황	김 유 현	토 지 관 리 과	
27	동별 TV시청료 분리고지 현황	유 남 렬	재 무 과	
28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명세 및 관리현황과 소재지, 면적(평수) 관리현황(예: 공원, 녹지, 하천부지, 노인정, 탁아원, 어린이놀이터등)	유 남 렬	재 무 과	
29	청소장비 수리비 지출내역	사 민 생 활 분 과 (홍 성 환)	청 소 과	
30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관련규정, 서울시에서 하달한 지시지침 및 관련서류	정 연 우	사 회 복 지 과	
31	'90년도에 선정되었던 자중 '91년도에 제외된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제외사유	정 연 우	사 회 복 지 과	
32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자)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정 연 우	사 회 복 지 과	

연 번	요 구 자 료	요 구 의 원	소 관 과	비 고
33	취로대상자 연명부 및 취로증 발급대상	정 연 우	사 회 복 지 과	
34	저소득층보호 지원금 집행현황 (생활보호대상자 및 취로사업등)	정 연 우	사 회 복 지 과	
35	기허가된 숙박업소가 구조변경허가를 받 은 업소 현황(업소명 기재)	이 종 일	위 생 과	
36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숫자와 단속건 수	이 종 만	위 생 과	
37	주택단열 개수자금 대부대상	송 윤 석	산 업 과	
38	공해공장 이전명령 건수와 미이행건수	이 종 일	산 업 과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건수와 내역	홍 성 환	산 업 과	
40	환경보전법에 외거 대형건축물에서 발생 되는 오수 정화시설의 감독 실적	이 종 만	청 소 과	
41	전염병 예방법에 외거 관내의 해당업소 명과 점검 건수	이 종 만	보 건 소	
42	병·의원으로부터 법정 전염병의 환자수 와, 사후관리(가정방문등) 현황	이 종 일	보 건 소	
43	불임시술숫자와 금액, 타관거주자에 지 급 여부	홍 성 환	보 건 소	
44	위생업소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 및 발 급대상	정 연 우	보 건 소	
45	91년도 증공필건축물에 대한 각 설계 사무 소별 현황	도시정비분과 (김 문 태)	건 축 과	
46	행정재개발사업 추진 및 다수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김 종 열	주 택 과	
4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및 사용처	전 병 만	지 역 교 통 과	
48	불법 유동 광고물 조치현황	전 병 만	도 시 정 비 과	
49	마을버스 영업용전환시의 지침과 그에 관련된 신청서사본일체(아울러처리된내용)	윤 명 규	지 역 교 통 과	
50	그린벨트지역내 불법시설물 단속및 조치 내역	윤 명 규	공 원 녹 지 과	

연 번	요 구 자 료	요 구 의 원	소 관 과	비고
51	91년도에 제기된 구청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각 건별로 가. 발생년월일, 소송제목 소송내역 나. 원고및 피고(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기) 다. 소송비용 라. 관련 내부회의록 사본일체 마. 1심 종료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 사본 바. 송사와 관련 서울시 및 자체감사 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도시건설분과	기 획 예 산 과	
52	'91.11.30까지 접수된 건설국소관의 진정 서사본 일체및 건별조치내역	도시건설분과	건 설 관 리 과	
53	'91년 4월이후 마포구내 도로공사 발주된 건에 관한 각 시설물별로 가. 도로발주허가일시, 허가면적, 허가물명 시행청 나. 발주허가서 사본 다. 환경영향 평가서 라. 관련민원 및 진정처리 마. 허가발주중 중지된 각 건별의 사유및 이유 내역 바. 마포구의 전반적인 공사진척 사항의 문제점		토 목 과	
54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시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유 남 렬	재 무 과	
55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시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유 남 렬	건 설 관 리 과	
56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시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유 남 렬	공 원 녹 지 과	
57	구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소재지와 면적 (예 : 노인정, 탁아원등)	유 남 렬	가 정 복 지 과	